제 6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7년 03월 15일**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진도읍 주민센터 담당자 : 김 하나 문의전화 : 061-540-6523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이**	이** 1980-02-21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33-07-21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죽엽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77-11-01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2017년 03월 07일

진도읍장 인